’26년 상반기

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

2026. 9.



관세청
Korea Customs Service
원 산 지 검 증 과

관세청
Korea Customs Service

CONTENTS

Ⅰ.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통계 ····· 1

가. 전체 검증요청 현황 ····· 1
나. 협정·유형별 검증요청 현황 ····· 2
다. 검증요청 사유 ····· 2
라. 주요 검증요청 품목 ····· 3

Ⅱ. 주요 협정별 검증동향 ····· 4

가. 한-튀르키예 FTA ····· 4
나. 한-EU FTA ····· 5
다. 한-중국 FTA ····· 6
라. 한-아세안 FTA ····· 7
마. 한-인도 CEPA ····· 7
바. 기타 FTA (한-영국, 한-베트남 등) ····· 8
사. 비특혜 원산지검증 ····· 8

Ⅲ. 미국 수출물품 자체 검증 동향 ····· 10



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

〔'26년 상반기〕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

✔ 본 자료의 「Ⅰ.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통계」, 「Ⅱ. 주요 협정별 검증동향」 내용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우리나라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한 건에 한정된 정보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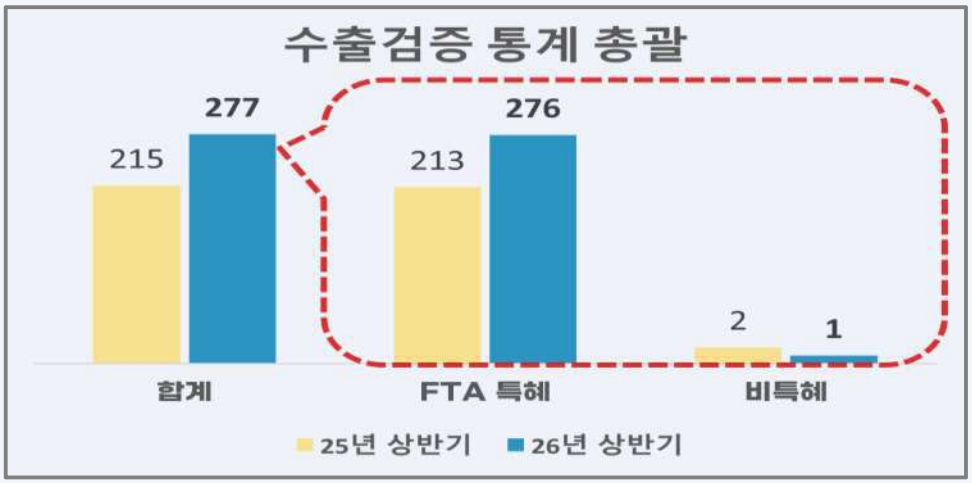
Ⅰ.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통계

가 전체 검증요청 현황

□ 2026년 상반기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은 **총 277건**으로 전년 동기 215건보다 **28.8% 증가**했습니다.

전체 검증요청	FTA 검증요청	비특혜 검증요청
277건	**276건**	**1건**
전년 동기 대비 +28.8%	전년 동기 대비 +29.6%	전년 동기 대비 -50.0%

(단위 : 업체수)



❍ 〔**FTA 검증**〕 2026년도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FTA를 활용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해 **협정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9.6% 증가**하였습니다. 이는 **튀르키예·중국·인도로부터의 검증 요청이 2026년 증가**함에 따른 결과입니다.

❍ 〔**비특혜 검증**〕 2026년도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**비특혜 검증요청 건수**는 **전년 동기 2건에서 1건으로 감소했습니다.**

나 협정·유형별 검증요청 현황

(단위 : 업체수)

구 분		'23년	'24년	'25년	'25. 1~6월	'26. 1~6월	전년 대비
FTA 특혜 등	튀르키예	198	338	340	166	215	29.5%
	EU	68	71	45	31	31	0%
	중국	12	12	11	7	17	142.9%
	아세안	16	13	9	4	3	▲ 25.0%
	인도	18	14	9	2	7	250.0%
	기타	6	15	7	5	3	▲ 40.0%
비특혜		5	10	3	2	1	▲ 50.0%
합 계		323	473	424	215	277	28.8%

❍ 〔**FTA 검증**〕 2026년 상반기 FTA 원산지검증은 **한-튀르키예 / 한-EU / 한-중국 FTA**와 관련하여 상대국의 검증 요청이 집중되었습니다. 특히 **튀르키예**와 **중국 및 인도**의 **원산지검증 요청 건수**가 **많이 증가**하였으며, 나머지 국가의 검증 건수는 감소하였습니다.

다 검증요청 사유



❍ 〔**요청사유**〕 2026년 상반기에는 **"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"**을 이유로 상대국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.

✔ 각 FTA 특성에 따라 **협정별로 원산지검증 요청 사유에 차이가 있으므로**, 검증 대응 시 「**Ⅱ. 주요 협정별 검증동향**」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라 주요 검증요청 품목

❍ 〔**요청품목**〕 **섬유류** 205건(74.0%), **화학공업제품** 24건(8.7%), **기계류** 16건(5.8%) 순으로 많았습니다. 이들 3개 품목군이 전체 277건의 88.4%를 차지했습니다.

검증품목	집계건수	비중
섬유류	**205건**	**74.0%**
화학공업제품	24건	8.7%
기계류	16건	5.8%
전자전기제품	9건	3.2%
플라스틱·고무 및 가죽제품	9건	3.2%
철강금속제품	7건	2.5%
생활용품	3건	1.1%
농림수산물	2건	0.7%
잡제품	2건	0.7%
합계	**277건**	**100.0%**

❍ 〔**품목별 특징**〕 **섬유류 205건 중** 한-튀르키예 요청이 197건으로 96.1%를 차지했습니다. 한-EU는 전자전기제품과 화학공업제품이 각 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

Ⅱ. 주요 협정별 검증동향

가 한-튀르키예 FTA



❍ 〔**현황**〕 2026년도 기준, 발효된 협정 중 **한-튀르키예 FTA**에 따른 수출검증 요청이 **가장 많았습니다.** (전체 요청건수 중 약 77.6% 차지)

❍ 〔**품목**〕 **섬유류**(직물 등) 〉 **화학공업제품**(합성수지 등) 〉 **기계류**(펌프 등)

❍ 〔**요청사유**〕 튀르키예 당국은 **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**을 위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.

❍ 〔**주요 사례**〕

❑ 역외산 직물의 원상태 재수출**에 대해 원산지신고서 발행**

➜ 한-튀르키예 FTA 규정상 면직물 제품은 '역내산 실'을 사용하여 생산되어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, 수출업체 A社는 중국산 직물을 국내 가공 없이 원상태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신고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 됨

❍ 〔**튀르키예 수출 시 유의사항**〕

✔ 튀르키예로부터 대부분 **한국산 섬유류 제품**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. **수입산 직물을 국내 가공없이 원상태로 재수출하는 경우, 국내에서 구매하거나 우리나라를 경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산으로 신고해서는 안됩니다.**

섬유류 수출기업은 원재료의 원산지와 실제 생산·가공 내역을 확인하고, **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**해야 합니다. 이를 입증할 원재료 구매자료와 생산·가공 기록 등도 함께 확보·보관하기기 바랍니다.

나 한-EU FTA

❍ 〔**현황**〕 2026년 상반기에 요청은 **31건**으로 전년 동기와 같으며, **독일 6건, 덴마크 5건 등 14개 회원국**로부터 원산지검증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. (전체 요청건수 중 약 11.2% 차지)

❍ 〔**품목**〕 **전자기기**(이차전지 등) 〉 **화학공업제품**(화장품 등) 〉 **섬유류**(편·직물 등)

❍ 〔**요청사유**〕 EU 각국의 관세당국은 ① **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**와 ② **한국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 유효여부** 확인을 위해 검증 요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.

❍ 〔**주요 사례**〕

❑ **부적정 원산지신고서 발행**

➜ 인증수출자인 B社는 **인증받지 않은 품목**에 대해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**부적정하게 발행**

➜ **불가리아에 섬유류를 수출하는** 국내 수출업체 C社는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충족 되었으나, **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** 원산지 신고서를 **부적정하게 발급**

❍ 〔**EU 수출 시 유의사항**〕

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**수출물품이 인증받은 품목에 포함되는지,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**를 확인하기 바랍니다.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**인증범위를 벗어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작성한 신고서**는 **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** 신고서의 오류를 발견하면 세관에 문의하여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

다 한-중국 FTA

❍ 〔**현황**〕 2026년 상반기 중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요청건수가 **전년동기 대비 142.9% 증가**하였습니다.(7건 → 17건)

❍ 〔**품목**〕 **화학공업제품**(합성수지 등) 〉 **기계류**(펌프 등)

❍ 〔**요청사유**〕 중국 관세당국은 ① **협정상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**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으며, ② **원산지증명서와 중국 수입신고서 내역 간 품목분류 불일치**를 이유로 검증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.

❍ 〔**주요 사례**〕

❑ **정확한 HS세번 검토 없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**

➜ 수출업체 D社는 수출물품(지방산 혼합물)의 성분·특성·용도에 따른 정확한 HS세번과 **다른 HS세번으로 수출신고서 및 원산지 증명서**를 **부적정하게 발급**

❍ 〔**중국 수출 시 유의사항**〕

✔ 화학제품은 상품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**성분·조성·용도와 혼합물 여부를 확인하여 정확한 HS세번을 적용**하시기 바랍니다. 수입국에서 다른 HS세번를 적용하는 경우 **해당 세번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**하고, **HS세번 오류**를 발견하면 세관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문의하여 **수출신고 정정** 및 **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**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 바랍니다.

라 한-아세안 FTA

❍ 〔**현황**〕 2026년 상반기 아세안 관세당국의 검증요청은 총 3건으로 전년 동기 4건보다 25%감소했습니다. **말레이시아·태국·베트남 관세당국**으로부터만 요청이 왔습니다.

❍ 〔**품목**〕 **섬유류 · 철강금속제품 · 플라스틱제품** 각 1건

❍ 〔**요청사유**〕 아세안 회원국은 ①**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** 또는 ②**원산지증명서의 내용 기재 오류** 등을 이유로 검증을 요청하였습니다.

❍ 〔**아세안 수출 시 유의사항**〕

✔ 원산지증명서와 송장·운송서류의 **품명, 수량, 송장번호 등이 일치**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제3국 송장이 사용되는 거래는 협정에서 요구하는 표시와 송장 발행자 정보가 정확한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.

마 한-인도 CEPA

❍ 〔**현황**〕 **2026년 상반기** 인도 당국의 검증요청 건수는 7건으로 전년 동기 2건보다 250% 증가했습니다.

❍ 〔**품목**〕 **플라스틱제품 · 전자전기제품 · 기계류 각 1건**

❍ 〔**인도 수출 시 유의사항**〕

✔ 인도 당국은 '조합기준' 중 '부가가치기준' 충족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, **인도 수출 시 부가가치 계산 관련 원산지증빙서류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**

바 기타 FTA (한-영국, 한-베트남)

❍ 〔**현황**〕 상위 5개 협정 외에는 **한-영국 FTA / 한-베트남 FTA / RCEP** 관련하여 각 1건씩 수출검증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.

❍ 〔**품목**〕 **섬유류**(가방) · **플라스틱제품** · **철강금속제품**

❍ 〔**요청사유**〕 수출물품의 **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**을 이유로 검증을 요청하였습니다.

❍ 〔**수출 시 유의사항**〕

✔ 같은 국가와 복수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거래라도 **실제 적용한 협정의 원산지기준과 증명 절차**로 관리해야 합니다. 베트남 수출시 한-아세안·한-베트남 FTA 등을 구분하여 관리하기 바랍니다.

사 비특혜 원산지검증

❍ 〔**현황**〕 2026년 상반기에는 **튀르키예**로부터만 **비특혜 원산지 검증 요청**이 1건 왔습니다.

❍ 〔**품목**〕 **철강금속제품**(중후판*)

* 선박·건설 등에 쓰이는 두꺼운 철강판

❍ 〔**요청사유**〕 수출물품의 **한국산 여부 확인**을 위해 요청하였습니다.

❍ 〔**수출 시 유의사항**〕

✔ **FTA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구분**하여

관리하시기 바랍니다. 수출물품의 한국산 여부, 수입국에서 적용하는 비특혜 원산지기준 및 증명서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.

✔ 비특혜 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**FTA 원산지기준 충족이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.** 실제 원재료와 생산공정에 근거하여 적용 기준별 판단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※〔참고 - 비특혜 원산지 판정 관련 규정 발췌〕

❑ 대외무역법 시행령

제61조(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)

① 법 제34조에 따른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1.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(이하 "완전생산물품"이라 한다)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
2. 수입 물품의 생산·제조·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(이하 "실질적 변형"이라 한다)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
3. 수입 물품의 생산·제조·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

Ⅲ. 미국 수출물품 자체 검증 동향

★ 대미 수출물품의 원산지 점검 결과 공유



❍ 〔**배경**〕 미국의 원산지 조사 강화에 대비하여 대미수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, 국산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인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위험성이 높은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**한-미 FTA 규정 등 준수 여부를 점검**하였습니다.

❍ 〔**점검 결과**〕 대부분 수출업체가 적정하게 **한-미 FTA 규정**을 **준수**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, **일부 수출자**의 경우 **대외무역법 위반 내용이 확인**되었습니다.

❍ 〔**주요 사례**〕 주요 위반 사례 유형

중국산 직물·편물을 **수입**하여 **국내**에서 **염색·날염 공정** 후 미국에 수출하고 **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**. 해당 물품은 국내에서 염색 등 공정을 수행했지만, **중국산 반제품**과 **완제품**의 **6단위 세번**이 **동일**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2항에 따른 **실질적 변형기준 불충족**으로 **대외무역관리규정 위반**

❍ 〔**미국 수출 시 유의사항**〕

✔ 2026년 하반기에도 **대미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점검**을 시행할 예정입니다. 중국산 반제품을 국내에서 단순 가공하는 경우에는 **세번(HS 6단위)이 변경되지 않아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**.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생산공정, 세번변경 여부 및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해당물품이 **원산지판정기준을 충족**하는지 철저히 **검토**하시기 바랍니다.